

의안번호	제 410 호
의 결 연 월 일	2009년 9월 일 (제 283 회)

**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 
전부개정조례안**

발 의 자	연만흠 의원 외 6인
발의연월일	2009년 9월 2일

##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410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09년 9월 2일

발 의 자 : 연만흠, 강태원, 김환동  
박재국, 이필용, 장주식  
조영재의원(7인)

### 개정이유

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모법인 「지방자치법」 개정에 따라 법조항을 변경하고, 상위법에 정하여진 규정을 삭제하며,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,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도민이 조례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.

###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명 “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”를 “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 조례”로 함.

나. 조례에 명시된 상위법령 조항을 「지방자치법」 제140조의2에서 같은 법 제149조로 하고,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11을 제94조로 함(안 제1조)

다. 상위법에서 정해진 사항을 삭제함(안 제3조제3항과 제4항,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)

라. 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만들기」 기준에 따른 용어 및 체계 정비

- 1) 제1조(목적)에서 사용된 약칭을 제2조로 함(안 제2조)
- 2) “및”을 “과” 또는 “나”로 함.
- 3) 기타 등 일본식 표현, 어려운 용어의 정비 등

### 참고자료

가. 관계법령 발췌 : 지방자치법(별첨)

나. 관련부서 협의 : 의견없음(행정국)

다. 예산조치 :

라. 규제심사 :

## 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충청북도 분쟁조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시·군 상호간의 분쟁사항 조정
2. 시장·군수 상호간 분쟁사항 조정
3. 시군행정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조정

제3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 
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정책관리실장, 행정국장, 경제통상국장, 균형발전국장, 문화관광환경국장으로 한다.  
③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.

제4조(회의록) 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놓아야 한다.

1. 회의일시와 장소
2. 출석위원과 참석자 명단

3. 토의사항과 진행사항
4. 위원과 참석자의 발언 요지
5. 의결사항
6. 그 밖에 중요사항

②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 작성 후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6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관계법령 발취

### □ 지방자치법

제149조 (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등) ① 제148조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과 제156조제1항에 따른 협의사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(이하 "중앙분쟁조정위원회"라 한다)와 시·도에 지방자치단체 지방분쟁조정위원회(이하 "지방분쟁조정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08.2.29>

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시·도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
2. 시·도를 달리하는 시·군 및 자치구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
3. 시·도와 시·군 및 자치구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
4. 시·도와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
5. 시·도를 달리하는 시·군 및 자치구와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
6. 시·도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

③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·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을 심의·의결한다.

④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분쟁조정위원회(이하 "분쟁조정위원회"라 한다)는 각각 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중 5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위원이 된다. <개정 2008.2.29>

1.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
2. 판사·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
3. 그 밖에 지방자치사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
⑥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중 5명은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·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, 조례로 정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위원이 된다.

-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.

## □ 지방자치법 시행령

- 제94조 (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** ① 지방자치단체 지방분쟁조정위원회(이하 "지방분쟁조정위원회"라 한다)에 관하여는 제87조와 제92조의 규정은 준용한다.
- ②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